

(부의안전내역 및 요약서-참조2)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전 내역

연번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법무과	각 상임 위원회
2	○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
3	○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폐지 규칙안	"	"
4	○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 위원회
5	○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무 과	"
6	○ 성남시 축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예산법무과	"
7	○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감사담당관실	"
8	○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과	"
9	○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
10	○ 성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
11	○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 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	지역경제과	경제환경 위원회
12	○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정 과	"
13	○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 계 과	"
14	○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연번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5	○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회 계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16	○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소행정과	"
17	○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18	○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19	○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 수 과	"
20	○ 성남시 가로수 조성 · 관리 조례안	녹 지 과	"
21	○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 육 청소년과	사회복지 위 원 회
22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	"
23	○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 택 과	도시건설 위 원 회
24	○ 성남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도시계획과	"
25	○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주 택 과	"
26	○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 로 과	"
27	○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	200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 제안이유 ○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 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 주요골자 ○ 총 규 모 : 2,646,344,581천원 ○ 일반회계 : 1,312,617,939천원 ○ 특별회계 : 1,333,726,642천원 ○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추경예산안</th><th>기정예산</th><th>증 감 액</th><th>%</th></tr> </thead> <tbody> <tr> <td>합 계</td><td>2,646,344,581</td><td>2,698,610,241</td><td>△ 52,265,660</td><td>△ 1.94</td></tr> <tr> <td>일반회계</td><td>1,312,617,939</td><td>1,242,753,652</td><td>69,864,287</td><td>5.62</td></tr> <tr> <td>특별회계</td><td>1,333,726,642</td><td>1,455,856,589</td><td>△ 122,129,947</td><td>△ 8.39</td></tr> </tbody> </table>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	합 계	2,646,344,581	2,698,610,241	△ 52,265,660	△ 1.94	일반회계	1,312,617,939	1,242,753,652	69,864,287	5.62	특별회계	1,333,726,642	1,455,856,589	△ 122,129,947	△ 8.39	예산법무과	각 상임 위 원 회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																				
합 계	2,646,344,581	2,698,610,241	△ 52,265,660	△ 1.94																				
일반회계	1,312,617,939	1,242,753,652	69,864,287	5.62																				
특별회계	1,333,726,642	1,455,856,589	△ 122,129,947	△ 8.39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의원이 준수 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윤리강령 마련 및 준수 규정(안 제3조~제4조) ○ 의원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등 의무사항 및 각종 금지사항 규정(안 제5조~제12조) ○ 성실한 의회 출석(안 제13조) ○ 징계심사 절차(안 제14조)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3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폐지 규칙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성남시의회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 규칙 폐지”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
4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본 조례 중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변경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 조례중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변경 (안 제1, 2조)	감사담당관	자치행정 위원회
5	성남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법제처 기준에 의한 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례 구성의 일관성 및 본 조례상 유관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표기를 바꾸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2조를 제3조로 조례 제3조를 제2조로 변경하고자 함. ○ 경찰서 명칭 정정(안 제2조제2항5호) ○ 약칭의 정정(안 제5조제2항, 제6조)	총 무 과	”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6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 1. 12자로 삭제되었으며 보건의료의 촉탁이 없어짐. ☐ 주 요 골 자 ○ 본 조례 폐지	예산법무과	자치행정 위 원 회
7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상위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 개정(안 제3조제2항) • 시소속 공무원 →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 → <u>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u> 나. 상위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감사담당관	”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8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문화예술과 】 ○ 2006. 4. 28일자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새로운 법률이 각각 제정되어 ○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청장에게사무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제정된 각각의 법률에 의거 사무위임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 교통지도과 】 ○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카메라 추가설치 및 버스급행체계(BRT) 추진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확대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무를 구청으로 위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조정 및 신설 [문화예술과 - 사무명 조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무 -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등록 -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업자에 대한 지원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무 - 일반게임장 제공업의 허가 -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등록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등록·신고 등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무 -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 노래연습장 등록 등	정책기획과	자치행정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9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 폐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명 폐지 [교통지도과 - 위임사무 신설] -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지도·단속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 처리 □ 제안이유 -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 일부인 때 해당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함에 따라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주민투표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원 중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여 시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 일부인 때 해당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함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구성요건에서 성남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중 주민투표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12조제4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0	성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은 그 임기를 시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안 제12조제5항) □ 제안이유 ○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적응을 돕고, ○ 지역내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 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의 각종 행정혜 택을 받을 수 있음(안 제3조) 나. 시는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의 추진과 외국인 실태조사를 실 시함(안 제4조) 다.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 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출 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 은 제외(안 제5조) 라.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 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 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 역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지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마.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마련(안 제7조) 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3조) 사.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성남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와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 등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및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11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근거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은닉재산의 범위 : 현금 • 예금 • 주식 그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 • 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	세 정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 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 방법 : 성명 및 주소를 명 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한다 ☐ 제안이유 ○ 관사 입주자의 미퇴거시 처리 방안을 신설하 여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도모코자 필요한 사 항을 개정 보완하려고 함 ☐ 주요골자 가. 관사 사용료를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한해 전 액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6조) 나. 관사 입주자의 입주기간 경과후 미퇴거시 변 상금 징수 규정 신설(안 제59조)	회 계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13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가 소유한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 게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 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정하기 위함 ○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 규정	"	"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4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여 물품의 망실·훼손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 ○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혼선 방지 □ 제안이유 ○ 취득(토지, 건물) 1) 도촌 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도촌 택지개발지구내 주민입주가 2007. 12월 부터 시작되고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라 신규입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도촌동 108번지 답 2,834㎡)신축이 필요하여 • 지구단위계획상 동청사부지로 결정된 도촌 동 108번지상에 주택공사로 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2,834㎡,조성원가 1,170천원/㎡)건립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00㎡의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함 2) 판교지구내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 판교 택지개발지구내 주민입주가 2008년 12월 부터 시작되어 신규 유입인구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판교동 417-2 답 2,145㎡)건립이 필요하여 • 지구단위계획상 복지시설부지로 결정된 판 교동 417-2번지(복2)상에 토지공사로부터 부 지매입후 (2,073㎡, 조성원가 225만원/㎡) 건 립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7,254㎡)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하고자 함	회 계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3) 판교지구내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부지 매입 및 신축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판교택지개발지구내 노인복지시설 건립으로, 현재 3개구 각 1개소씩의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더불어 균형있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백현동 산10-2, 임야, 6,612㎡)이 필요 - 지구단위계획상 복지시설부지로 결정된 백현동 산10-2(복4)상에 주택공사로부터 부지 매입 후(6,612㎡, 조성원가 225만원/㎡)건립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9,917.4㎡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함 4) 분당 장애인 종합복지시설 신축 - 성남시 장애인 인구는 성남시 인구의 3%를 차지하며 연10%의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성남시 장애인 복지관은 1개소에 불과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분당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장애인복지센터(야탑동 170-1) 및 장애인체육시설(야탑동 171)로 지정된 시유지 2필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6,645㎡의 규모로 재활작업장, 체육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종합복지 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5) 『미혼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 대부분의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보호시설의 부재로 미혼모자 발생시 부득이 타 시·군의 시설로 입소를 의뢰하나 대기자의 수가 많아 입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수정구 북정동 652-3번지 295.7㎡를 매입하고 동부지에 연면적 730㎡ 지하1층 지하4층 1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신축하여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주거 및 취업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 예방 및 저출산 문제에 기여코자 함 6) 성남 종합운동장(인라인스케이트장부지)내 복합 체육회관 신축 - 성남 종합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1년이 경과되어 노후 되었기 약 25,000㎡의 복합체육회관을 건립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선수촌 및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고자 함 - 체육회관의 건립·확충으로 기존·신시가지의 체육균형 발전과 체육관련단체(회) 사무실의 통합·운영관리 체제구축, 선수촌 운영으로 직장운동 본부의 경기력향상 및 체육인들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허브공간을 제공하여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코자 함 7) 탄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증설공사 - 탄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관람석이 캐노피 미설치로 선수의 시야장애, 관람객의 눈부심 및 우천시 비를 맞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없어 불편사항 발생 - 주경기장에 관람석 캐노피(막구조 지붕)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증설하여 시야장애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8) 성남시 화장장 제2추모의 집(납골당)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 성남도시계획시설 화장장 결정구역의 제2추모의 집(납골당)건립 예정부지 인근도로 및 구거 2필지(615㎡)를 매입하고 - 현 추모의 집(납골당)봉안시설이 2009년 하순경 만장이 예상되어 부지면적 9,463㎡에 건물 연면적 4,000㎡ 규모로 50,000기를 봉안 할 수 있는 제2추모의 집을 신축하여 성남 시민들의 납골 수요해결과 장묘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 처분(건물) 1) 성남 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물 철거(멸실) - 성남 종합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경과년수가 21년된 노후시설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넓은 부지에 단일 종목만 운영되고 있는 등 그 시설물 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임 - 이용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3,742㎡)을 철거하고 복합체육회관을 건립하여 부지와 건축물의 이용측면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 득(토지, 건물) 1) 성남 도촌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토 지 ----- 1건 2,834㎡ 3,940,000천원 - 동청사 부지매입 (도촌동 108번지)----- 1건 2,834㎡ 3,940,000천 원 • 건 물 ----- 1건 3,000㎡ 5,700,000천원 - 동청사 신축 (도촌동 108번지) --- 1건 3,000㎡ 5,700,000천원 2) 판교지구내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 토 지 ----- 1건 2,145㎡중 2,073㎡ 4,664,250천원 - 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 (판교동417-2번지)--- 1건 2,145㎡중 2,073㎡ 4,664,250천 원 • 건 물 ----- 1건 7,254㎡ 19,137,222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판교동 417-2 번지)--- 1건 7,254㎡ 19,137,222천 원 3) 판교지구내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부지 매입 및 신축 • 토 지 ----- 1건 16,364㎡중 6,612㎡ 14,877,000천원 - 노인복지회관부지매입 (백현동 산10-2번지)--- 1건 16,364㎡중 6,612㎡ 14,877,000천 원 • 건 물 ----- 1건 9,917.4㎡ 26,047,497천원 - 노인복지회관 신축 (백현동 산 10-2번지)-- 1건 9,917.4㎡ 26,047,497천 원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4) 분당 장애인 종합복지 시설 신축 • 건 물 ----- 1건 16,645㎡ 30,080,000천원 - 장애인 종합복지시설 신축 (야탑동 170-1, 171 번지)---- 1건 16,645㎡ 30,080,000천원 5) 『미혼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지매입 및 신축 • 토 지 ----- 1건 295.7㎡ 967,920천원 - 공동생활가정 부지매입 (북정동 652-3 번지)---- 1건 295.7㎡ 967,920천원 • 건 물 ----- 1건 730㎡ 1,481,529천원 - 공동생활가정 건물 신축 (북정동 652-3 번지)----- 1건 730㎡ 1,481,529천원 6) 성남 종합운동장(인라인스케이트장부지)내 복합 체육회관 신축 • 건 물 ----- 1건 25,000㎡ 49,991,000천원 - 복합체육회관 신축 (성남동 3110 번지)----- 1건 25,000㎡ 49,991,000천원 7) 탄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증설공사 (증축) • 건 물 ----- 1건 8,694㎡ 3,183,000천원 - 막구조 지붕설치(증축) (야탑동 486번지외 2필지)--- 1건 8,694㎡ 3,183,000천원 8) 성남시 화장장 제2추모의 집(납골당)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5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토 지 ----- 1건 4,033㎡중 615㎡ 22,428천원 - 제2추모의 집 부지매입 (갈현동 126-1, 134-1번지) 1건 4,033㎡중 615㎡ 22,428천원 • 건 물 ----- 1건 4,000㎡ 12,000,000천원 - 제2추모의 집 신축 (갈현동 122번지 일원)---- 1건 4,000㎡ 12,000,000천원 □ 처 분(건물) 1) 성남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물 철거(멸실) • 건 물 ----- 1건 3,742.67㎡ 250,000천원 - 인라인 스케이트장 철거 (성남동 3110번지)----- 1건 3,742.67㎡ 250,000천원 □ 제안이유 ○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2006. 12)으로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일부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규정 신설 □ 주요골자 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수수료 납부조항 신설(안 제9조제1항) 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반환규정 신설(안 제12조제1항) 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및 수수료 부과 취소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라.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 조정(안 별표 1)	청소행정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6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폐기물 조례 개정 □ 주요골자 가.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과 태료를 50천원에서 30천원으로 조정(안 별표) 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 서를 기한내에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과태료 신설(안 별표) 다.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부적인 과태료 처분 규정 신설 (안 별표)	청소행정과	경제환경 위 원 회
17	성남시폐기물관리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주요골자 가. 쓰레기 및 재활용품 용어를 현행 폐기물관리 법에 맞게 정비 (안 제2조 1,2호) 나.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관련 용어 조항 신설 (안 제2조 5,6호)	”	”
18	성남시저수수질감사 수수료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수돗물 불신의 원인인 옥내급수관 정체수와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 「수도법」(제7777호, 2005. 12. 29) 개정과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2007. 5. 31) 이 시달됨에 따라 ○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 수 과	”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9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 주요골자 가. 현행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를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여, (안 제명) 나. 기존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에 대한 검사수수료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1항,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 □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함 □ 주요골자 ○ 가로수 계획의 수립 및 가로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가로수 수종의 선정 · 식재기준 및 조성협약에 관한 규정 ○ 가로수 관리시설물 및 병충해방제에 관한 규정 ○ 가로수 비용부담 · 부담금 강제징수 및 신고등에 관한 규정 ○ 가로수 점검 · 주민참여 및 보고 · 자료유지에 관한 규정	녹 지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0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	□ 제안이유 ○ 지역난방은 주민의 기본생활권으로 정부에서 이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2007. 7. 16.매일경제신문등)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등의 언론에 보도된바 있음. ○ 주식상장은 민영화의 전단계로서 난방비 인상 및 부실경영, 주민의 권익 침해, 그동안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 분담금 사외유출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상존 하고 있음. ○ 성남시의회는 주민의 기본생활권을 무시한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을 반대하며 공익기관으로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에 매진 할 것을 촉구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한국지역난방 공사는 에너지 절약, 환경공해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가일층 기여하여야 함. ○ 시민이 납부한 공사비분담금(1조 3천억원)에 대해 재산권인정으로 권익보장. (성남시의 분담금 : 1,642억원) ○ 주민의 기본생활권을 침해하고 난방비 인상 및 부실경영이 우려되는 주식 상장계획을 반대함.	지역경제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1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2005. 4. 27 『청소년기본법』이 전면 개정되고 청소년 관련법규(『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일부가 개정이 되어 『성남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관련 조항을 부분 개정함. ○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 명칭관련성남시지명위원회 심의 결정에 (문화예술과-7324,2006.6.21)따라 성남시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변경 □ 주요골자 ○ 목적 (법조항변경) (안 제1조) • 근거 관련 법규인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로 변경 ○ 법조항 신설 및 추가(안 제6조 제2항) • ② 시장은 필요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는 성남시 청소년 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조문 신설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 위원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2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 제안이유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주요골자 ○ 제1장 총칙 : 제1조~제5조 - 제1조 : 목적 - 제4조 : 사업 - 활동진흥, 보호 및 복지, 시설 및 사업 운영관리 ○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제15조 - 제6조 : 재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제7조 : 재산의 관리 - 제9조 : 경비의 조달방법등 - 제11조 : 잉여금의 처리 - 세입으로 처리 ○ 제3장 임원 및 직원 : 제16조~제26조 - 임 원 - 임원수 : 15인(이사장 - 시장, 상임이사 - 1인, 감사2인을 포함) - 이 사: 선임직 - 관련분야인사 당연직 - 의회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 기획국장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직 원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및 교직이수자, 사회복지사, 장애인관련분야 졸업자 및 경험자 - 청소년관련학과 졸업자 및 청소년관련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제4장 이사회 : 제27조~제32조 • 제29조 : 의결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개회, 출석이사 과반수찬성 ○ 제5장 위원회 : 제33조~제38조 • 위원회 : 정책, 운영, 자문위원회(위원: 10명 이내) • 인사위원회 : 7인 이내로 구성 ○ 제6장 사무기구 : 제39조~제40조 • 사무국과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구 ○ 제7장 보칙 : 제41조~제45조 • 정관변경, 해산,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등 ○ 부 칙 : 제1조~제7조 • 고용승계 : 고용승계대상자는 재단설립 당시의 해당 청소년 시설종사 자에 한 한다		
23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일반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나 ○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 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형평에 위배되므로 ○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게 함 (안 제4조 제9호) ○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정함 (안 제6조 제8항)	주 택 과	도시건설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4	성남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 제안이유 ○ 05. 8. 31 부동산대책의 공공택지 공급방안 중 핵심사업인 성남 북정, 창곡동 일원을 포함한 송파·거여지구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성남시 북정동, 창곡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 등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구역명</th><th rowspan="2">위 치</th><th colspan="3">면 적(k㎡)</th></tr><tr><th>기 정</th><th>변 경</th><th>변경후</th></tr><tr><td>변경</td><td>개발제한구역</td><td>성남시 수정구 북정, 창곡동 일원</td><td>51.750</td><td>감)2.526</td><td>49.224</td></tr></table>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k㎡)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성남시 수정구 북정, 창곡동 일원	51.750	감)2.526	49.224	도시계획과	도시건설위원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k㎡)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성남시 수정구 북정, 창곡동 일원	51.750	감)2.526	49.224														
25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이유 ○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임대주택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분쟁발생시 제도권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 주요골자 가.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주택관리 등 분쟁발생시 조정 - (안 제3조) 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안 제 4조 제1항, 제2항)	주택과	도시건설위원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6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위원장 : 시장) ▪ 임대사업자 추천 3인, 임차인 대표회의 추천 3인 ▪ 임대주택관련분야에서 시장 위촉 3인 ▪ 소속 공무원중 당해 시장이 임명 1인 ○ 임 기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추천자 : 당해 분쟁완료 ▪ 임대주택관련분야 당해 시장 위촉자 : 3년 다. 조정의 효력 ----- (안 제12조 제2항)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간 수락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제안이유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제명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함 나.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 (안 제3조 제1항 [별표 1]관련) 다. 전년도 점용료보다 당해연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하는 점용료 조정산식을 변경함 (안 제7조 제1항) [별표2]관련)	도 로 과	도시건설 위 원 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7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라. 변상금 조정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7조 제2항) 마. 이의신청시 준용하는 법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73조”를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 부터 제79조까지의”로 변경함 (안 제9조 관련) □ 제안이유 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적용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	도 로 과	도시건설 위 원 회